

경운대학교 지적재산권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기타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 이라 한다)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란, 다음 각 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지적재산권” 이라 함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3. “직무발명” 이라 함은 경운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대학교,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4. “자유발명” 이라고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5. “실시보상” 이라 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적재산권의 취득, 처분, 관리, 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관여하는 관련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담당부서) 직무발명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관리, 운영과 기술이전 및 보상 등은 협력단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대학교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력단 내에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여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
 3. 승계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특허출원, 등록, 처분, 실시, 기술이전 여부
 4.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수입금의 배분 및 운용계획
 5. 기술가치의 평가
 6. 지적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7. 지적재산권 관련규정의 개폐
 8.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② 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심사를 외부공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협력단 단장이 되며,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시에 발명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을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사업단이 지원하였고 그 사업 책임자가 교직원일 경우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 및 출원

제9조(직무발명의 귀속) 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협력단이 승계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협력단 소유로 한다. 단, 교직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소유한다.

② 교직원등이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고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과정에 협력단에 위임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대표발명자 1인을 선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신고서
2. 발명의 설명서
3. 선행기술조사서
4. 권리승계 합의서
5. 변리사지정 신고서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고 이를 본인 스스로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나 출원 및 등록 후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해 권리를 대학교 또는 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1. 발명 신고서
2. 권리승계 합의서

제11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대학교 또는 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승계) 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협력단이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 발명으로 한다.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협력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발명을 특허출원 및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협력단 50%와 본인 50%의 비율로 부담한다.

② 협력단이 산학협력관련 사업비를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시 제1항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에게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협력단은 특허출원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

제14조(보상금의 지급) ① 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하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② 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15조(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기술이전

제18조(기술가치의 평가) 이전 대상 기술은 기술이전 기준가치 산정을 위하여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필요시 전문기관에 관련 사무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가치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노하우인 경우에는 발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한다.

제19조(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 ①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발명자 등의 협조를 통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 및 기술개발에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연구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제20조(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은 협력단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협상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기술이전 희망업체 요청자료) 협력단에서는 기술도입 희망업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실시)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기술 이전계약 희망 조건
4. 기타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2조(공동소유 기술의 처리)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외부기관과 공동 소유인 경우 당해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 경상기술료의 수수를 조건으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술을 이전 받은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①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간, 잔여 권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노하우 계약기간은 기술의 지속성, 독점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특허, 노하우가 병용된 기술이전의 경우 계약기간은 전체 기술 중 특허, 노하우의 비중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기술이전 담당교수) 기술이전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의 대표 발명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술의 기술이전을 책임진다.

제6장 기술료의 징수

제26조(기술료의 산정) ① 선급 기술료는 외부전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이

전을 위한 관련 필요경비 및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경상기술료는 기술별로 시장, 수익, 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결정한다.

③ 경상기술료의 산출대상 기간 및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기술료의 징수) ① 선급기술료는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하고, 경상기술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료는 현금수수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술료 지급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의 처리는 해당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8조(기술료의 처리) ① 협력단은 직무발명의 성과로써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권리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을 기술 이전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기술료 보상을 하며, 보상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에 따른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기술료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 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그 발명자의 상속인이 지급받은 기술료 보상금은 그 지적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적재산권이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발명자 보상) 징수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정부지원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연구비지원 기관에서 정한 기술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기술료 수입금에서 협력단이 부담한 지적재산권의 유지비용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7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며 잔여액은 협력단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2. 단, 기술료 수익금에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 금액은 90%를, 200만원 초과분은 7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며, 잔여액은 협력단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3. 해당 기술인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으로서의 기여자 보상은 기술료 수익금의 5%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발명자)는 제외한다.

제30조(기술이전 관련비용 공제) ① 제29조 제1호의 기술이전 관련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술가치 평가 용역비용
2. 기술마케팅 소요비용
3. 기술이전 협상 용역비용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②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협력단에서 매 회계연도 초 전년도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권설정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대학교 및 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 통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협력단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지적재산권의 권리존속여부) 협력단은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연차등록료 7년차부터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발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전의 교직원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 것으로 결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협력단이 승계한다.

② 이 규정 시행전에 발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협력단이 승계 받는 경우에는 제14조와 제29조에 따라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